

## Ⅲ. 재무건전성

- 재무건전성의 국제적 정합성 충족이라는 정책기조 하에 보험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적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보완책과 위험 경감 수단을 제공하고자 함.
  - 지급여력 기준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고, 2018년 IFRS 2단계로 인한 부채시가평가를 부채적정성 평가(LAT)의 단계적 강화로 대응
    - ※ RBC 등 재무건전성 제도개선 로드맵은 조만간 발표할 계획
  -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험 경감 수단 제공

### 1. RBC 강화

- 지급여력(RBC) 기준 강화
  - (내용) 지급여력(RBC) 기준 강화를 추진하되, 보험회사의 과도한 자금 조달 부담을 고려하여 2016년까지 단계적 시행
    - 국제기구 평가(FSAP) 및 부채시가 평가 도입(IFRS 2단계, 2018년 도입)을 고려하여 2016년까지 완료
    - 비명시적 지급여력 구두권고(150% 수준)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보험회사의 자율 확충노력 유도

- (평가) 보험회사가 스스로 재무건전성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 일정 조정 노력으로 평가

## 2. 부채시가평가 대응

### ■ 국제회계기준 대응

- (내용) 현행 부채적정성 평가제도를 점진적으로 보완·강화하여 부채시가 평가 도입(IFRS 2단계, 2018년 도입)에 미리 대응
  - 전문가 T/F 등을 구성하여 도입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, 조속히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방안 등도 마련할 예정
- (평가) 글로벌 회계기준 변화에 선제적·능동적 대응 유도
  - 지급여력규제와 부채시가평가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종합적인 로드맵 제시 필요

## 3. 위험 경감 수단 제공

### ■ 리스크 관리 수단 확대

- (내용) 보험회사가 운용하는 변액보험, 외화책임준비금에 대하여 단순 위험관리 목적의 자산운용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
  - 자산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회피 목적의 헤지거래는 파생 상품 한도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손익 변동성 완화 방안도 검토
- (평가) 보험회사 스스로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헤지수단을 다양화

## ■ 비상위험준비금 지급여력 인정(손보만 해당)

- (내용) 비상위험준비금<sup>2)</sup> 중 세금충당 목적의 일부 금액(이연법인세)은 지급여력금액으로 지속 인정
  - 이연법인세는 올해까지만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할 예정이었으나, 국제사례 및 회계처리 기준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인정을 허용
- (평가) 지급여력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여 대외 신뢰도 제고에 도움

---

2) 대규모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적립하는 금액(회계기준상 자본 항목)